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

책임작성 |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02-707-9843, msnoh@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문제의식
2. 국내 정책 총괄·조정 현황
3. 해외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사례
4.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

| 요약

-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지적 계속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754개 사업을 통해 26.1조원의 예산 투입('20)
 - 최근 3년간 사업 수는 30.2%(407개), 사업예산은 57.7%(9.6조원) 증가
 - 국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요청 증가
 -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책자금 총괄 거버넌스 구축 등
- 중소기업, R&D, 재난 및 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총괄·조정 체계 운영 중
 - 중소기업 정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8.6)을 통해 총괄·조정 권한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사전협의 및 조정 가능
 - 평가 및 협의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의 이행 강제력 부족
 - R&D 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06.3)을 통해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 부여
 -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 재난 및 안전 정책(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4.12)을 통해 총괄·조정 권한 부여
 - 예산요구서 검토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 해외의 경우 미국·스페인 등에서 중소기업 총괄·조정 기능 존재

〈미국의 중소기업처〉

- 중소기업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
- SBIR/STTR, 금융, 정부조달 등 연방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처가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 보유
 - 중소기업처는 SBIR 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시행을 총괄하고 운영실태의 조사·모니터링 역할 수행
 - 중소기업처장은 재무부장관과 상무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출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정책을 수립
 - 중소기업처장은 ‘소수민족비즈니스개발청장’과 연방정부 기관의 ‘중소기업·취약기업 활용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조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 중소기업처장은 ‘중소기업제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가위원회〉

-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공식 기구
 - 다개년 계획 수립, 소관기관들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조정 등
- 전원회의(Plenary Body)와 실무회의(Standing Committee)로 구분
 - 13개 정부부처, 8개 국가기관, 자치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노사대표자 참여

■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증장기 투자전략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

1. 문제의식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¹⁾ 현황

■ 사업 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20년 기준 1,754개로 최근 3년간 30.2%(407개) 증가
 - 중앙행정기관은 20개 부처(청·위원회 포함)에서 439개의 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315개의 사업 수행

〈표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단위: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증가(증가율)
중앙행정기관	288	297	344	439	151(52.4)
지방자치단체	1,059	1,125	1,309	1,315	256(24.2)
합 계	1,347	1,422	1,653	1,754	407(30.2)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분석, 각연도

■ 사업예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20년 기준 26조 1,406억원으로 최근 3년간 57.7%(9조 5,600억원) 증가
 - 중앙행정기관은 20개 부처(청·위원회 포함)에서 23조 1,862억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조 9,544억원 지원

〈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증가(증가율)
중앙행정기관	142,939	177,724	194,777	231,862	88,923(62.2)
지방자치단체	22,867	21,360	23,813	29,544	6,677(29.2)
합 계	165,806	199,084	218,590	261,406	95,600(57.7)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분석, 각연도

1)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30% 이상인 직접지원사업 또는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사업

나.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연계 강화(국회 입법조사처, '19)

- 용자, 투자, 보증을 제외한 순수 창업지원 목적의 사업을 2019년 기준 14개 부처에서 시행 중
- 정부 및 지자체 소관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 창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68.4점, 평균 만족도는 72.8점에 불과(창업진흥원, '20)

■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국회 이성만 의원, '20)

-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한 확대 필요
-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총괄·조정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필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획부터 집행까지 총괄 거버넌스 필요(국회 김경만 의원, '20)

- 우리나라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중복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
- 자금조달력이 낮고 기술 사업성이 높은 시장 소외분야나, 신용위험은 크고 기대 수익이 낮아 민간에서 소외되는 영역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제대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

2. 국내 정책 총괄·조정 현황

가. 중소기업 정책

■ 정책 조정

- 중소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중소기업기본법 §4의2)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설치(법 §20의4 제1항)
 - (주요 안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육성계획, 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 위원장은 중소기업부장관, 위원은 정부위원(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제4항)

■ 사전 협의 및 조정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함(법 §20의5 제1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조정(제2항)

■ 중소기업부 관장 사무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정부조직법 §44)

■ 시사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하여 총괄·조정 기능의 이행 강제력 부족
- 중소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부재

나. R&D 정책

■ 정책 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부처의 투자우선순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R&D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조사·분석·평가와도 연계(과학기술기본법 §12의2 제5항)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제7항)
-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사업, 기초과학 분야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배분·조정(시행령 §2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헌법 §127 제3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1)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심의(법 §2~5)
 -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정부위원(장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업무 수행

■ 기술성 평가 및 투자전략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과학기술기본법 §12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7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장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등(정부조직법 §29)

다. 재난 및 안전 정책

■ 정책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법 §10의2 제3항)
 -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 R&D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법 §10의2 제4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법 §9)
-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정부위원(장관급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업무 수행

■ 행정안전부 관장 사무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 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정부조직법 §34)

■ 시사점

-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

〈표 3〉 국내 정책 총괄·조정 현황

구 분		중소기업	R&D	재난 및 안전
근거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책 조정	내용	총괄·조정(법§4의2)	예산 배분·조정(법§12의2)	총괄·조정(법§6)
	시행	'18.6.12	'06.3.31	'14.12.30
중장기 투자전략		미수립	수립 예정 ¹⁾ (법§7의2)	미수립
사전 타당성 검토		협의·조정 ²⁾ (법§20의5)	검토·조정(법§12의2)	검토·조정(법§10의2)
예산 심의	심의근거	없음	법§12의2, 시행령§21	법§10의2
	심의대상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³⁾	행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⁴⁾
	검토내용		각 부처의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조사·분석·평가 결과도 반영)	
	결과통보		예산 배분·조정 내역 ⁶⁾ (과기부 → 기재부)	검토결과 ⁷⁾ (행안부 → 기재부)
	예산편성 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심의 기구	명칭 (근거)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법§20의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법§12의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법§9)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위원 (간사)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담당부처 관장사무 (정부조직법)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법§44)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법§29)	재난 및 안전 정책의 수립·총괄·조정(법§34)

주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규정은 2020.12.10. 시행 예정

주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연계하지 않고 있음

주3) '21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의 945개 사업 대상

주4) '21년 기준 29개 중앙행정기관의 399개 사업 대상

주5) 예산안의 편성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국가재정법 제32조)

주6)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주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예산 배분·조정 권한이 없어 참고자료로만 활용

3. 해외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사례

가. 미국의 중소기업처^{2)*}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1) 개요

■ 기관 설립

- 1953년 7월 30일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정과 함께 설립

* 미국 법전(U.S.Code) Title 15(Commerce and Trade) §633~§657u

■ 기관 지위

- 대통령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15 U.S.C. 633)
 - 연방정부 부처 또는 다른 기관에 소속되거나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음
- 중소기업처는 각료급 기관(Cabinet-level agency)으로 처장은 국무위원
 - 클린턴 대통령은 중소기업처장을 국무위원 지위(cabinet level position)로 격상³⁾
 - 부시 대통령은 중소기업처장을 국무위원 지위에서 강등⁴⁾
 - 오바마 대통령이 중소기업처장을 다시 국무위원 지위로 복원⁵⁾
 -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처장의 국무위원 지위를 유지⁶⁾
- 대통령은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있는 다른 부처 또는 기관의 기능, 권한, 임무를 중소기업처에 이관할 수 있음(15 U.S.C. 641)

■ 연차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처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상원의장, 상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하원의장에게 종합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15 U.S.C. 639(a))

2) 미국 관계 법령, 노민선(2017), 최세경(2019)을 참고하여 작성함

3) INC., "Time to Fix the SBA", 2003.9.1.

4) Alternet, "Bush Downsizes Small Business", 2004.6.1.

5) The Wall Street Journal, "Obama to Elevate SBA Chief", 2012.1.13.

6) <https://www.whitehouse.gov/the-trump-administration/the-cabinet/>

(2) 정책 총괄·조정

■ 종합

- 중소기업처가 SBIR/STTR, 금융, 정부조달 등 연방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 보유

■ R&D

- 1억 달러(STTR은 10억 달러) 이상의 외부 R&D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연방 정부 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출 하한선을 규정(15 U.S.C. 638(f),(n))
 - 〈SBIR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회계연도 예산 대비) 1.5%('93~'94) → 2.0%('95~'96) → 2.5%('97~'11) → 2.6% ('12) → 2.7%('13) → 2.8%('14) → 2.9%('15) → 3.0%('16) → 3.2%('17~)
 - 〈STTR 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회계연도 예산 대비) 0.15%('03) → 0.3%('04~'11) → 0.35%('12~'13) → 0.4%('14~'15) → 0.45%('16 이후)
- 중소기업처는 연방정부 기관의 SBIR과 STTR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음(15 U.S.C. 638(b)(6))
 - 중소기업처는 SBIR 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SBIR의 시행을 총괄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⁷⁾
- 중소기업처는 매년 상원의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위원회'와 하원의 중소기업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에 연방정부 기관의 SBIR/STTR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 실태를 보고해야 함(15 U.S.C. 638(b)(7))
- 중소기업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과 협의 및 협력하고, 조사결과를 알리고 권고할 권한이 있으며, 연방정부 기관들은 중소기업처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15 U.S.C. 638(c))
- SBIR/STTR에 참여하는 연방정부 기관들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를 중소기업처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 제출해야 함(15 U.S.C. 638(g)(9))

7) <https://www.sbir.gov/about>

■ 금융

- 중소기업처장은 대출정책위원회(Loan Policy Board)를 구성(15 U.S.C. 633(d))
 - 중소기업처장이 위원장, 재무부장관과 상무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
 -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승인과 거절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
 - *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지 여부 또는 중소기업처의 기능과 정부의 다른 정책 및 활동 간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

■ 정부조달

- 중소기업처장은 중소기업조달자문위원회(Small Business Procurement Advisory Council)를 구성(15 U.S.C. 644a, 연방조달간소화법 §7104)
 - 중소기업처장(또는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소수민족비즈니스개발청*의 장, 연방정부 기관의 ‘중소·취약기업활용실**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
 - *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 **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담당 규제기관에 전달
 -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계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
 - 매년 하원의 중소기업위원회와 상원의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위원회’에 결과보고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처장은 중소기업제조대책위원회(Small Business Manufacturing Task Force)를 구성(15 U.S.C. 631c)
 - 중소기업처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1년에 4회 이상의 회의 개최
 -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 평가 및 확인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 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을 파악 및 연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발굴 및 제시
 - 대책위원회 결과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대통령, 상원의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위원회’와 하원의 중소기업위원회에 제출

나.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가위원회*⁸⁾

* State Council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 위원회 설립

- 2013년 12월 5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Royal Decree 962/2013에 의해 구성

■ 위원회 지위 및 구성

-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공식 기구(중소기업 설립, 성장 및 경쟁력 촉진 포함)
- 총 52명의 위원으로 구성
 - 13개 정부부처, 8개 국가기관, 자치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노사대표자 등

■ 위원회 주요 업무

- 중소기업 지원 다개년(multiannual) 계획 수립
-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 메커니즘, 조치 및 규제 변화에 대한 권고 및 제안
- 소관기관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격 기준과 서비스 표준의 조화
- EU 중소기업법의 스페인 적용을 모니터링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 국제화, 공공조달, ICT 도입, 행정부담 완화 등
- 규제 프로젝트와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

■ 위원회 운영

- 전원회의(Plenary Body)
 - 중소기업 정책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조언기구(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 권한
- 실무회의(Standing Committee)
 - 전원회의에서 승인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및 실행업무 담당

8) OECD(2016)를 참고하여 작성

4.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가. 분석 시사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8.6)으로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 보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 부여(법 §4의2)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부여(법 §20의3)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법 §20의4)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및 조정 기능(법 §20의5)
-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 필요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위원이 참석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
 - * (사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규제자유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30.2%, 지원사업 예산은 57.7% 증가
 - *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이 많고,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혼란 초래
 - 하지만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하여 총괄·조정 기능의 이행 강제력 부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업무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을 추가할 필요
 - ‘정부조직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17.7)된 이후,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규정 추가(’18.6)
 -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 명시 필요

나. 추진 과제

(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개정
- (내용)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기구로서의 역할 부여
 - 심의·조정사항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운영) ‘중소기업위원회’는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안전을 사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구성) ‘중소기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위원 구성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현재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급으로 위원 구성

※ 유사사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 실무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 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 부여

- (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6 신설
- (내용)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작성
 - ‘중소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시 반영
-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
 - 현재 주요 R&D 예산(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성 절차 준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조치)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7 신설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중소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투자목표, 투자방향, 자원배분, 역할분담 등의 내용 포함
 - (운영)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작업 시 반영하고, 필요 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유사사례(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7의2) 규정(‘20.12.10 시행 예정)

(2) 정부조직법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

- (조치) ‘정부조직법’ 제44조 개정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 추가
 - 현행 조문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로 규정
- ※ 유사사례(정부조직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포함
 - 행정안전부(§34):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포함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9),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VI)」.

노민선(201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각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분석」.

창업진흥원(2020), 「한눈에 보는 창업동향」.

최세경(2019), 「미국 중소기업 법체계와 지원제도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OECD(2016), 「OECD Studie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in Israel 2016)」.

Alternet, “Bush Downsizes Small Business”, 2004.6.1.

Inc., “Time to Fix the SBA”, 2003.9.1.

The Wall Street Journal, “Obama to Elevate SBA Chief”, 2012.1.13.

<https://www.sbir.gov/about>.

<https://www.whitehouse.gov/the-trump-administration/the-cabinet/>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병헌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